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 발표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5년 4월 13일(월) 오전 11시

장 소: 광화문 광장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기자회견 순서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 발표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 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 취지발언 : 세월호 유가족

□ 발 언 : 이 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박 대수 /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강 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 선정결과 발표 : 사회자

1. 10년 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1. 시민이 뽑은 산재사망, 재난사고 최악의 기업

1.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 선정근거와 정부통계 문제 : 이진우 / 사회진보연대

□ 추 모 : 국화꽃 헌화와 묵념

□ 기자회견문낭독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요약문>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 해운과 현대건설 - 기업살인법 제정 반드시 필요하다 -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발표해 왔음.
-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재난사고와 산재사망’을 구분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함.

2.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 | |
|---|
| 1)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기관 : 1위 현대건설(110명 사망), 2위 대우건설(102명 사망), 3위 GS 건설(101명 사망), 4위 우정사업본부(75명 사망), 5위 현대중공업(74명 사망) |
| 2)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살인 기업 5곳 : 청해진해운, 옥시 레킷 벤키저, 코오롱,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각각 삼성전자와 청해진해운 |
| 3)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건설(10명 사망, 건설업), 현대중공업(8명 사망, 제조업) |

- 사망자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 해운과 현대건설임. 참고로 현대건설은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가장 많은 산재사망을 기록하였으나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 건설업을 제외할 때, 지난 10년간 산재사망을 가장 많이 일으킨 기업은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중공업임.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중공업은 산재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관.기업임.
- 1,502명의 시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기업과 삼성전자. 시민살인기업으로 69.0%가 청해진 해운을 선정하였고, 노동자 살인기업으로는 46.7%가 삼성전자를 선정함. 산재 사망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현대건설보다 삼성전자를 손꼽은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시민들의 선정 이유 중에서>

- | |
|--|
| - 청해진해운 : “노후선박, 과적, 안전교육미실시, 운항 중 위험신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점, 바로 구조하지 않은 점 등 엄청난 잘못이 있으면서 선장 선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기업” |
| - 삼성전자 :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백혈병 등 발암물질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하지 않은 채 숨기고 무마하려고만 함” |

3. 은폐되는 산재, 미온적 처벌에 그치고 있는 산재사망·재난사고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의 수는 22,801명에 이룸. 2012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임. 하지만, 이러한 산재사망자수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에 한정된 것이고, 공무원과 선원 등의 재해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통계는 적용 대상의 한계, 산재은폐, 직업병 산재 불승인 남발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산재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망재해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산재 통계기준 변경으로 산재사망이 감소한 것처럼 착시효과만 내고 있음. 게다가 산재사망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무하고, 실행 집행도 없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원청 처벌은 없음, 하청업체나 하급직원만 처벌되는 것이 현실임.
- 재난사고 역시 마찬가지임. 국민 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재난사고에 의한 사망통계는 일원화 되지 않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대표이사가 사고발생에 직접 개입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조직적 책임과 처벌은 전무함.

4. “기업살인법 제정 논의 본격화 해야”

-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재벌 살리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침묵한 결과. 산재사망사고, 재난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한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세월호 1년, 한국사회도 시민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 참사 1년

온 국민이 상주가 되어 비통함과 분노에 떨었지만,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건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은 거부되고,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에 나섰고,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 골병, 직업성 암으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을 계속 하고 있다. 죽음의 행렬은 일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근 길에서는 지하철 사고에, 운전 중에는 쌍크 홀에, 집에서 화재사고와 가습기 살균제로 곳곳이 사고의 현장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캠핑장, 수련원, 리조트, 공연장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씨 랜드 화재 참사의 유치원생부터 장성 요양병원의 어르신까지 온 국민이 불안한 위험사회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경제는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증가하는데 후진국형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은 기업에게는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이다. 사내 유보금을 수 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만 전가한다. 예방책임도 보상 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수 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 나가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라며 온 국민이 외쳤건만,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살리기에 골몰하며 참사의 원인인 규제완화, 민영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반복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진과 장관, 총리가 사죄 퍼포먼스를 했으나, 과연 그 중의 단 한명이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오로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직위만을 바꾸어 또 다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은 온갖 기술적인 용어로 가득차고, 정작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는 언급조차 없고, 또 다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안전을 내세우며, 안전을 또 다른 돈벌이 산업 육성책으로 치부할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최악의 살인기업과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마주하면서 숫자로 표기되는 노동자,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의 비통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의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거기에 있었고, 지난 10년의 참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순간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숫자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산재사망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위험을 외주화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면서 안전관리에는 투자도 예방과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행태는 강제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늘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로 선정되었다. 선정에 참여한 그 탄식과 분노를 모아 “안전은 모든 인간의 존엄한 인권”임을 선언하면서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3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노동부 안전감독 90%이상 사업장 법 위반, 사고 발생 사업장은 수 천건 법 위반 적발. 안전투자나 안전관리 인력은 미미
-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 발생은 ‘노동자, 시민의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임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사망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임에도 발생한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 기업 살인법을 제정
- ‘최악의 살인기업’은 산재사망 재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임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발표
-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천으로 합산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발표, 산재사망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해 특별상 선정 발표. 2011년부터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구분 선정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GS건설	현대건설	한국타이어	코리아 2000	GS건설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STX 조선해양	한라건설 LG화학	대우건설 현대제철	?

3)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에서 산재사망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의 심각성과 숨방망이 처벌이 제기 됨
-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구분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
-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10년간 산재사망 50대기업”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재난사고 기업”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각각 선정 발표함.
- 반복적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강화 입법을 촉구함.

2.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7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27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29	삼성엔지니어링	28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25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33	한전KPS	23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53	36	극동건설	21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21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20
15	현대자동차	45	41	제일E&S	20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20
17	대우조선해양	39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38	43	한라건설	1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45	KT	18
20	현대제철	37	45	한국타이어	18
21	포스코	36	45	교촌치킨	18
22	경남기업	35	45	LG 화학	18
23	CJ 대한통운	33	49	고려개발	16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32	49	삼부토건	16
25	서희건설	28	49	한라	16
26	두산중공업	28	49	한양	16

○ 대상 년도 : 2005년- 2014년

○ 근거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 중대재해 보고 자료,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

○ 산재보험 통계는 산재승인일 기준. 하청 산재는 원청으로 합산

3. 시민이 뽑은 재난사고,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1) 선정기업

-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 청해진 해운
- 지난 10년간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 삼성전자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지난 10년간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순위	기업	득표율(%)	순위	기업	득표율(%)
1	청해진 해운	69.0	1	삼성전자	46.7
2	옥시레킷벤키저	17.5	2	우정사업본부	26.9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6.0	3	현대중공업	12.1
4	코오롱	4.9	4	현대건설	9.5
5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2.6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8

* 온라인 투표 선정 : 4월6일(월)- 12일(일) / 총 1,502명의 시민 참여

2) 후보기업

-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후보

청해진 해운	
현황	[세월호 참사 : 2014] 사망 295명 실종 9명
설명	18년된 세월호를 수입하여 과적·과승을 위해 배를 개조. 사고 당시 평형수를 빼고, 최대적재량의 2배에 이르는 과적을 함. 지난 1년 여간 2번 운항에 1번 꼴로 화물 과적을 일삼으며, 29억원의 추가 수익. 비용절감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 선원 안전 교육은 안중에도 없어 승객 구조 실패. 승무원들은,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배가 위험하다. 더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세월호 선장은, "세월호의 복원력이 낮아 화물 적재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조타수는, "조타기가 고장 났으니 고쳐달라"고 요구.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이런 경고들을 모두 무시.
옥시 레킷 벤키저	
현황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 2011~2013] 정부인정 57명. 피해자 주장 140명 이상 공식 접수된 361건 중 168건이 높은 인과관계. 사망 104건 중 57건이 원인으로 결론
설명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성분(PHMG, PGH, CMIT)은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미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으로 140여명 이상이 사망(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

	<p>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는 168명을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사망 104건 중 57건이 살균제의 흡입과 상당한 관련 있다고 발표.</p> <p>옥시레킷벤커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음.</p>
코오롱	
현황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 2014] 사망 10명 부상 128명
설명	<p><대구지검 수사대책본부가 수사결과></p> <p>① 체육관 설계·시공·감리 담당자들이 부실하게 설계·시공·감리를 한 과실, ② 체육관 관리업체가 폭설로 지붕 위에 많은 눈이 쌓인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p> <p><대구지법 재판부></p> <p>"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이 밝혀졌다"</p> <p>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 폭설에도 제설작업 없이 체육관 사용하다, 지붕이 무너짐.</p> <p>리조트를 운영·관리한 마우나오션개발은 (주)코오롱(50%), 이웅열 회장(24%), 부친 이동찬 명예회장(26%)이 지분 보유, 사실상의 '개인회사'. 사고이후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은 사과를 함. 코오롱이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p> <p>하지만 처벌은 시공사에게 집중, 리조트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낮은 수위, 코오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음</p>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현황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 : 2014] 사망 21명 부상 7명
설명	<p>입원 중인 80대 치매 노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p> <p>화재가 난 별관에 79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당직 간호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p> <p>불은 8분 만에 꺼졌는데 불이 발생한 별관 2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34명 중 20명과 야근을 하던 간호조무사 사망.</p> <p>당직인력인 간호조무사 1명은 유독가스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혼자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 함.</p> <p>8분간의 화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할 정도로 야간 배치 인력이 충분치 않았음. 또한 이를 감안한 소방계획도 미비.</p> <p>방화 노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 병원 이사장은 5년 4월.</p>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 2007] 사망 10명 부상 17명
설명	단속된 상태에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기다리며 출국을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p>이 구금되어 있다가 화재발생 후 철문을 제때 열어주지 않아 참사 발생. 정직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당직을 서고 있었음.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형식적, 화재 초동대처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보호실 3층에는 경비용역 2명만 근무를 서고 있었으며,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 장치로 시건 되어 있었음이 확인.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초 동대처가 미흡.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사고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시건한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사고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 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남.</p>
--	---

○ 지난 10년간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후보

현대건설	
현황	사망 110명
설명	<p>2014년 매출, 영업이익 1위 건설사(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대강 건설부터 원전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로 한해 수십조를 벌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 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는 기업.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자 수 1위. 2007년,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경력. 현대건설은 담당 건설 현장에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을 기록했 고, 가장 많은 산재 장애인을 만들어낸 기업(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011년 5월 한국산업 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현대건설 사 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31명으로 모든 건설회사를 통틀어 1위. 산재장애인 수 도 75명으로 가장 많았음. 부실한 안전시설 조치로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p>
현대중공업	
현황	사망 74명
설명	<p>현대중공업은 2012년 배우 안성기 씨를 내세워 "평균 근속 연수가 19년이 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홍보. 하지만, 1990-2009년에 정규직은 14.7% 늘는 데 그쳤지만, 사 내 하청 노동자는 931.6% 증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위험 작업을 4만명의 하청노동자에 게 전가하는 기업. 또한, 현대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주)선암공장 등 현대중공업 11 개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955억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음. 하지만 2013년부터 2014년에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가 216건. 위험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발생한 산재는 은폐하며, 은폐를 통해 천문학적 이 득까지 챙기는 나쁜 기업. 서울안전본부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이 대주주.</p>
삼성전자	
현황	사망 101명 (정부통계 31명 + 피해제보 80명)

설명	<p>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직업병 제보자 217명 중 80명 사망(2015.2.기준). 2010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나 여전히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책임 회피.</p> <p>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으나, 1차 누출후 27시간, 하청노동자 사망 후 2시간 동안 사고 은폐.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공개거부. 특별감독결과 1,934건의 산안법 위반.</p> <p>젊고 건강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 죽어나가는 기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p>
우정사업본부	
현황	사망 75명
설명	<p>2013년 12월 발표된 보고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의하면 집배원노동자의 연평균 3,379시간의 노동시간은 장시간노동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1.5배.</p> <p>극단적인 장시간노동은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 집배원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내내 심근경색과 뇌졸중 고위험집단에 속함. 과로로 인한 탈진은 이루어진 모든 조사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 기상악천후에도 배달해야 하며, 절반 이상의 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사고를 경험.</p> <p>우정사업본부조차도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즉각적인 인력증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증원, 견배 문제 해결, 초과노동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음.</p> <p>2014년 4월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우체국 노동자의 중대재해 자료 분석」에 의하면, 집배원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노동자의 6배 이상, 교통사고는 4배 이상.</p> <p>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75명 사망. 인력부족 상태를 방관하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고, 과로사하게 함. 산재사망 방치하는 중앙행정기관.</p>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황	사망 47명
설명	<p>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 폐지 후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p> <p>이후 탈선 39건, 충돌 5건, KTX산천 차량고장 113건 발생.</p> <p>2009년부터 진행된 코레일의 정원 감축 5,115명 중 유지보수 인력이 2,958명. 시설, 전기, 차량 인원을 집중적으로 감축.</p> <p>최근 4년간 열차고장 885건, 사상사고 347건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p> <p>2011년 검암역에서 야간에 열차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코레일테크' 소속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코레일과 수의계약으로 선로유지관리(정규직 44명, 비정규직 1171명으로 운영)</p> <p>한국철도공사로 전환 후 민영화 추진하며 안전관련 업무 외주화로 노동자 시민안전 위협. 1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 안전외면 민영화 추진 기업.</p>

4 .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 대상 년도 : 2014년

○ 근거자료 :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

○ 통계기준 참고 :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년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선정. 2015년 최악의 산재사망 살인기업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중대재해 보고는 사망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보고대상과 기준 적용 일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중대재해 보고에는 교통사고 등이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건설업

순위	기업명	산재사망자수	비고
1	현대건설	10명	12월26일 신 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질식사 사건 등
2	대우건설	9명	
3	롯데건설	5명	
4	한전KPS. 두산건설. GS건설	4명	

2)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산재사망자수	비고
1	현대중공업	8명	3/26일 선일엔지니어링 (주)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고 등
2	포스코	4명	
	한국철도공사	4명	
3	각 2명 현대제철. 현대삼호중공업(주), (주)SFC, YD 텍스타일주식회사. 웅진부천 산림조합, 사조산업(주), 두산건설(주)창원1공장, 대우조선해양(주), 대선조선(주)다대공장, 대명산전, 고려엔지니어링주식회사, SPP(주), (주)미래테크, (주)디엔에프		

참고>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세부 내역

사고 발생일	원청	하청	사망자수	사고내용
03-25	현대중공업(주)	(주)선일엔지니어링	1	떨어짐(추락)
04-21	현대중공업(주)	-	2	화재
04-28	현대중공업(주)	-	1	떨어짐(추락)
10-23	현대중공업(주)	영수산업 (주)	1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10-28	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	창성기업	1	감김,끼임(협착)
11-27	현대중공업(주)	금농산업(주)	1	떨어짐(추락)
12-27	현대중공업(주)	비씨테크	1	감김,끼임(협착)

5. 선정기준 세부 내용 및 사망사고 통계의 문제점

1) 산재사망 50대기업 선정기준

(1) 기초자료

- “사망재해 발생현황 (2005-2014)”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통계
-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 (2005-2014)” : 노동부
-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재해현황 (2005-2014)” : 공무원 연금 공단
- “선박사고 현황 (2006-2014)”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 구조과

○ 사망재해 발생현황 (2005-2014)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및 승인 결정 자료
- 업무상 사고, 질병, 교통사고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재해로 결정되어 산재보상 받은 통계임.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통계는 매년 발표하는 노동부 산재통계의 기초자료임. 산재 승인일을 기초로 하여 작성 발표됨.

○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보고 (2005-2014)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관할 노동관청에 보고자료를 기초로 집계된 자료
- 원청과 하청 기록, 사업장 주소 기록 등이 있음.
- 사고 발생일 기준임.

○ 우정 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현황 (2005-2014)

- 공무원 연금공단 제출 자료

- 우정 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상 통계에서 하청 기업별로 분류됨. 이에 실질 이를 포함하면 우정 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산재사망 통계는 더욱 많을 것임.

○ 선박사고 현황 (2006-2014)

- 해양수색구조과 제출 자료

- 10년간 자료 요청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만 자료 수집되어 있어, 2005년 자료는 누락
- 발생일시, 사고내용, 발생원인, 구조인원, 부상인원, 사망인원, 실종인원, 사고위치, 사고선박명 등의 기록 포함.

○ 원진 레이온

- 원진 레이온은 1988년도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문제가 밝혀졌고, 1993년도 폐업

- 원진 레이온은 직업병 인정 총 943명, 그중 사망 노동자 총 165명

- 폐업 이후에도 직업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자살 등 지속적으로 사망. 폐업이후 십 수년뒤인 2005년- 2014년에도 50명의 산재사망이 이어졌음.

○ 사조산업의 오룡호 침몰 : 제2의 세월호 27명 사망, 26명 실종

- 해양수색구조과 제출 자료

- 매년 발생하는 선박사고 중 선원 노동자만을 합산하여 산재사망 통계 반영

- 27명 사망, 26명 실종이나, 선박사고의 특성상 실종을 사망으로 합산하여 53명으로 산정

- 오물 배출구 파손 상태에서 자격미달 선원 고용한 채 출항. 노후선박 오룡호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쿼터량을 채우기 위해 조업 강행하다 피항 지연. 퇴선조차 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짐.

- 사고이후 국민 안전처가 한 일은 러시아로부터 신고 접수하여 관계기관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 임. 국민안전처 산하 부산 해양경비 안전처는 사고원인을 축소 발표. 사조사업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비의 연관성은 끊어내고, 선장에게로만 화살을 돌림.

(2) 자료 분석과 선정 기준

가. 공무원 연금과 선박 사고 현황 포함

- 공무원, 선원은 모두 노동자이면서도 일반 노동자와 별도 보상체계를 갖고 있음.

- 매년 상반기 발표하는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공무원 연금, 선박사고 현황을 기초로 하여 우정사업본부와 오룡호 사망 통계를 포함
- 선박 사고의 산재사망 노동자의 경우에는 선박사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망과 실종을 합산하여 “사망인원”으로 정리하였으며, 사고선박 중 국내 선박만을 기준으로 분석함.

나. 산재보험 통계를 기준으로 중대재해 보고를 분석하여 원 하청 합산

- 산재보험 보상 통계는 사고성 재해와 직업병을 포괄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으로 보상된 통계임.
- 산재보험의 산재사망 승인(유족급여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재보험 통계가 원 하청 합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를 기초로 하여 원 하청 합산 집계하였음

2) 시민이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준

(1) 기초자료

○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 해양수색구조과 : 선박사고 현황 (2006-2014)
- 경찰청 : 최근 10년간 경찰청의 안전사고 조사내역
- 방호조사과 : 위험물 중요 사고(2005-2013)내역 중 사망자 5명이상, 사상자 10명이상 사고목록.
- 법무부 형사기획 : 최근 10년간 중요 사고내역과 사법처리 현황
- 가슴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제출 자료와 ‘정부의 폐손상 조사위원회’ 자료를 복합 원용함

○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 산재사망 50대 기업 선정 기초자료
- 직업병 산재사망의 경우에는 불승인 남발 등으로 산재승인 통계의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 제보 및 조사통계와 정부 산재통계를 복합 원용함

(2) 산재사망, 재난사고 5대 후보기업 선정 기준

- 공식 정부 통계와 피해자 통계를 기초로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사망자 인원 산정
-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각 분야별 대표 기업 선정

○ 산재사망 5대 후보기업

: 현대건설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사망과 산재은폐 대표기업), 삼성전자 (직업병 발생 대표기업), 우정 사업본부 (중앙행정기관 산재사망 대표기업), 코레일 (외주화, 민영화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표기업)

○ 재난사고 5대 후보기업

: 청해진 해운 (세월호 참사), 옥시레킷 벤틀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대표기업), 코오롱 (시설 붕괴 참사 대표기업),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병원 참사 대표기업), 여수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참사 대표 기관)

3) 사망사고 통계의 문제점

(1) 산재사망 통계의 문제점

○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심각성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 2만2천8백1명(22,801명)
- 2000년 이후 산재사망 노동자는 3만3천9백2명으로 매년 2,422명 산재사망 반복
- 한국 산재사고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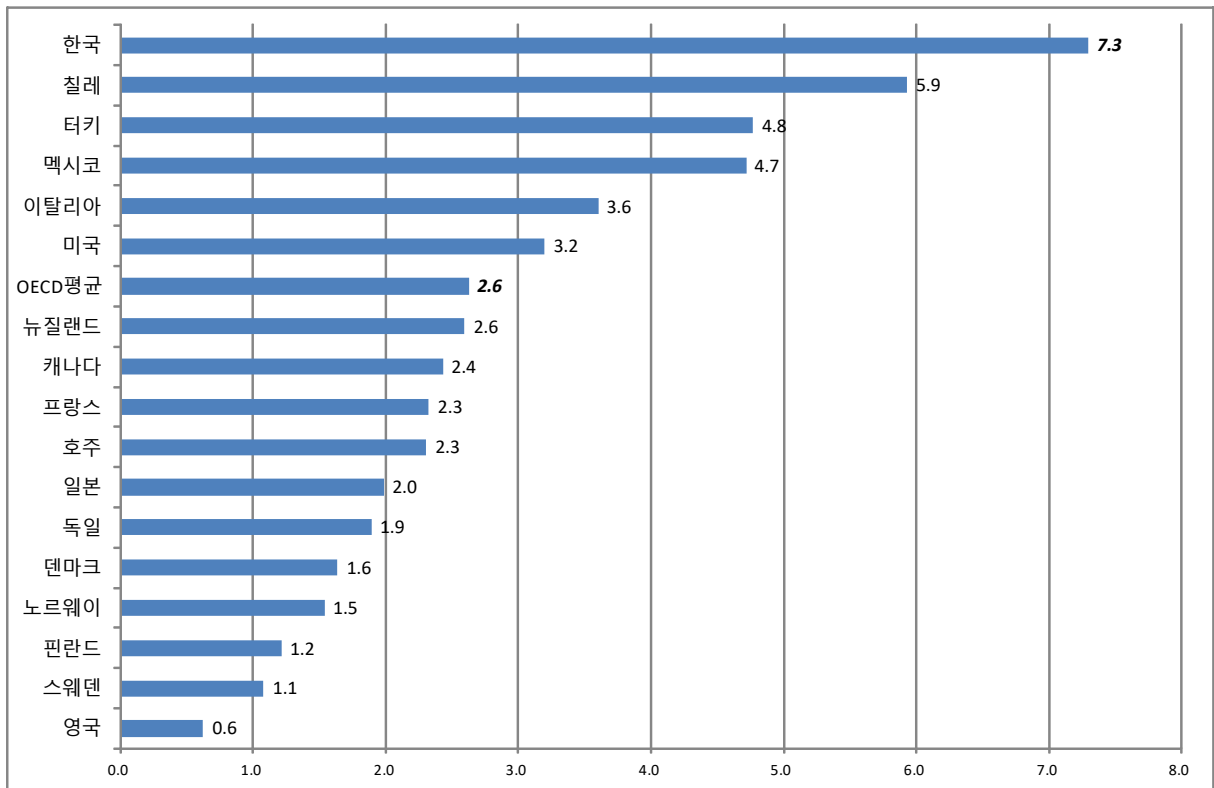


그림. OECD 주요 국가의 산재사고 사망율(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 2012년 기준)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

- 산재보상은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등 보상체계가 나뉘어 있음

- 노동부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타 보상체계에 의한 산재통계는 합산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통계는 첫째, 적용대상의 한계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 둘째, 산재은폐 (13배- 30배 산재 은폐), 셋째, 직업병 산재 불승인 남발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산재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

○ 노동부 산재 통계기준 변경으로 산재사망 통계 축소

년도	산재 ¹⁾ (명)	산재 사망 ²⁾ (명)	노동부 통계변경 ³⁾ (명)	사망 통계차이
2014	90,909	2,134	1,850	-284
2013	91,824	2,233	1,929	-304
2012	92,256	2,165	1,864	-301
2011	93,292	2,114	1,860	-254
2010	98,645	2,200	1,931	-269
2009	97,821	2,181	1,916	-265
2008	95,806	2,422	2,146	-276
2007	90,147	2,406	2,159	-247
2006	89,910	2,453	2,238	-215
2005	85,411	2,493	2,282	-211
합계	926,021	22,801	20,175	-2,726

1)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2) 산재사망 :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이전 공단 산재보상통계를 기준으로 발표)

3)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치 통계를 변경 발표

- 2012년 노동부는 산재통계 처리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 예방통계라는 명목 하에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고발생 1년 경과한 사고 사망자 등등’ 을 제외. 변경된 통계기준을 산재사망에만 반영하여 최근 10여년 간의 산재사망 통계 재정리 발표
- 외국의 경우 산업재해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출퇴근 재해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를 포함하는 국가가 다수임. 산재보상 통계, 산재예방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발표함.
- 한국은 출퇴근 재해,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는 조건에서 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3-4개 항목을 제외하여 예방통계를 산재발생 통계인 것처럼 발표. 산재사망이 감소한 것처럼 착시효과.
- 사업장의 교통사고는 ‘건설현장 건설기계 장비사고’ ‘자동차, 제철, 플랜트 현장 차량사고’ 등 신호수 배치, 신호체계, 경고등 설치, 도로 파손등 사업장 안전조치와 연관되어 있고, 산재를 은폐하는 기재로 작동되고 있는 분야임. 또한, 각종 사고성 재해나 감염 누출사고등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사망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2) 재난사고 통계의 문제점

- 국민 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재난사고에 의한 사망통계는 일원화 되지 않고 있음

- 경찰청, 해양 경찰청, 소방청등으로 사고 집계는 다원화 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동일한 사고에 대해 집계방식이나 산정이 상이함.
- 가슴기 살균 피해사고의 경우처럼 기업에 의한 집단적 사망사고 발생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집계기관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

6. 산재사망과 재난사고 처벌 현황

1) 산재사망 처벌 현황

- 반복적 산재사망의 근본원인은 숨방망이 처벌에 있음
- 중대재해의 연속 발생에도, 기업의 무혐의 처분이 30%를 상회함.
- 산재사망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무함. 실행 집행도 없음.
-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재사망에 원청 처벌은 없음, 하청업체나 하급직원만 처벌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2000	40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 사망, 25명 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 사망, 8명 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11명 부상	가스폭발	원청공장장 징역9월, 법인 벌금 3,500만원
삼성전자	1명 사망, 5명 부상	불산 누출	원청 사업주 무혐의
당진현대제철	18개월간 17명 사망	추락, 질식 등	원청 사업주 무혐의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하급 팀장만 처벌

2) 재난사고 처벌 현황

- 반복적 재난사고도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대표이사가 사고발생에 직접 개입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조직적 책임과 처벌은 전무함
- 대형 참사에는 설계변경, 감독, 규제완화 등 관련 공무원과 유착이 있으나, 처벌은 거의 없음
- 세월호 참사도 청해진 해운 재판이 진행 중이나, 기업의 조직적 책임으로 처벌받은 것은 기름유출에 대한 3,000만원 벌금 뿐임. 청해진 해운이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 중’ 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사고	사상자	처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6명실종 937명 부상	삼풍백화점 회장 7년6월, 사장 7년 선고 서초구청장 징역 10월
19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유치원생 19명 등 . 23명 사망 5명 부상	수련원 대표 징역 1년 선고. 다른 책임자 금고 집행유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17명 부상	현장소장, 생산부장 금고 2년 서울시 공사감독관, 동아건설 간부 집행유예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101명 사망 202명 부상	현장소장 징역 5년 나머지는 징역2-3년. 벌금형
1993년 서해 웨리호 침몰	292명 사망	(주)서해 웨리 상무, 군산해운항만청 계장 집행유예
2014년 경주마우나리조트	10명 사망 204명 부상	코오롱 건설, 마우나 리조트 불기소 하청업체 13명 처벌. 최고 금고 3년
2014년 장성요양병원 참사	21명 사망	1심:병원이사장 5년4개월 구형

3)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1) 기간의 사망사고 처벌의 한계

-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재벌 살리기에만 급급한 정권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임.
- 기업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 하고, 각종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수백 수천건의 법 위반을 일상화 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안전관리 체계도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과실치사로 한정하여 하청업체나 하급 관리자만 처벌받고, 형량자체가 한정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 66조에는 사망사고 처벌 규정은 있으나, 원청 처벌과 최고 책임자 처벌은 한계가 있음. 재난사고의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는 전무하며 과실치사 적용. 과실치사는 형량이 한정되어 있어, 기타 관련 법 조항을 개별 건으로 적용하고, 결국 하급관리자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법리적 한계가 명확함.

(2) 외국의 기업 살인법 제정 현황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사망사고의 절대다수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규정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기업 살인법”을 제정함.
- 영국의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산재사망 노동자 1명에게 부과한 벌금은 6억9천만원임.

국가	제정년도	법 명칭	주요 내용
캐나다	2003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산재사망, 재난 사고 포괄.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형사 처벌
호주 준주	2003	“산업 살인법”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수상도 기소 대상)
영국	2007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산재사망, 재난사고 포괄,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 각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 처벌 규정 있으나,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특별 규정 제정

- 미국도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열차 탈선 사고 이후 ‘조직벌’이라는 명칭으로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는 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세월호 참사 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일시: 2015년 4월28일 오후 2시
장소: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관 (예정)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